

「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9월 0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0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권혁수 도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일원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창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별표 6)에서는 시·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라 규정하였고

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“15대 이상 50대 미만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상위법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자	질의 내용	답변자	답변 내용
지광천 의원	• 등록기준 대수를 15대 이상 50 미만으로 규정하였는데 15대 규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	권혁수 도시과장	•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20대로 규정하고 있고 너무 작아지면 사업자 등록이 남발될 수 있어 15대 결정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**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,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.

**제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